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1, 2015. 2, pp. 215-237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의 경험적 검토*

한 신 실+
(국민연금연구원)
주 수 정++
(중앙대학교)
신 성 희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1. 문제제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근본 원리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불충분한 소득을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이전의 형식으로 대체·보충하는 소득의 평탄화 기능(income

* 본 논문에 대해 논평해 주신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자들이 속한 기관의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smoothing)이다(Legros, 2006; Barr and Diamond, 2010).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운용 주체(정부, 민간(금융)기관, 가족[1])와 부담 주체(정부, 사용자, 본인)에 따라서 공적연금(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과 민간연금(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 이전(자녀나 지역사회,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2] 각각의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은 시대와 정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과거, 노후소득보장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은퇴라는 인생 구조적 사건이 등장한 뒤, 은퇴 이후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조명되기 시작하였다(Laslett, 1976; Pampel, 1998: 26-27). 사회적 필요에 따른 당연한 논리로 국가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시작하였고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부상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기까지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담보되어 왔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자, 이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낀 선진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Disney, 2000; Zaidi et al., 2006). 결과적으로 축소 지향적 연금개혁은 불충분한 노후소득의 원인이 되었고, 각 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연금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꾀하였으며,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혁의 당위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식, 즉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노후소득 보장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 1994년, World Bank에서 발간한 『Averting the Old Age Crisis』와 2000년, ILO에서 발간한 『Social Security Pensions』, 이 두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World Bank와 ILO는 각각의 보고서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론적·경험적 근거, 그리고 제도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수많은 국가에서 이들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착수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개혁 경로가 발현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부터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제도,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외형상 다층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책적 청사진 역시 다층체계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

1) 사적 부양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김연명, 2013; Pampel, 1998: 58).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외형상)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적 부양이 매우 중요한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대다수 사람들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요 축으로 구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사적 이전의 중요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주체와 부담주체의 측면에서 구조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

부담주체 \ 운영주체	정부	민간(금융)기관	가족
정부	기초연금		
사용자(고용주)	국민연금	퇴직연금	
본인		개인연금	사적이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제는 각 층에서 담당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과 각각의 층에서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다층체계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 맞추어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유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Barr, 2002; Bonoli, 2003; Ambachtsheer, 2014).

한편 현재까지 구축되어 온 한국의 여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성숙도를 직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다층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2차례의 개혁과정에서 보장성이 전락하였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 범위마저 포괄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숙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역시 잔여적인 성숙 경로를 밟고 있다(김성욱·한신실, 2014). 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 대개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고용불안 역시 점점 고조되고 있어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하는 사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하게 담당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용하·임병인, 2013: 78-8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과연 내실 있게 성숙 가능하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시점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실제로 구축됐는가? 혹은 구축될 수 있는가?'란 질문을 가지고 다층체계의 측면에서 종단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본 연구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를 실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금제도별 가입 이력이라는 종단 추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학술적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했거나,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김경아, 2012; 한신실, 2013). 그 결과, 대개 다층체계의 성숙을 검토한 연구들은 시뮬레이션 기법이나 추계모형을 이용해 개별 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과 제도 수급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임병인·강성호, 2005; 류건식 외, 2009; 이지영·최현자, 2011; 강성호,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산방식에 의존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다층체계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개인들의 개별 연금제도 가입 여부를 토대로 노후소득보장 준비 양태가 다층체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담당해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소개와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역사적 경로에 대해서 회고하였고, 둘째, 기존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2.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제도설계와 역사적 경로

1)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설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이하, 다층체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수면 위로 부상한 뒤, 다층체계의 필요성과 모형 설계, 그리고 각 국가의 개혁동향과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범위가 확장되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대개 다층체계의 필요성과 가입 현황, 그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효과성,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루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층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 전, 선결 조건은 다층체계에 대한 소개와 그 구성요소별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정리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층체계가 적절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충분조건일 수 있지만, 실제 다층체계를 강조하는 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층(혹은 축) 모형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에 다층체계 구축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본 연구의 사전 작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다층체계 모형이라 할 수 있는 World Bank와 ILO의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World Bank(1994)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과도한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근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체재로서 총 3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된 다층체계를 제시하였다. 1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과방식의 정액형 기초연금제도로서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빈곤 완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2층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연금제도로 경제활동 당시의 소득 수준 유지, 즉 소득평탄화(income smoothing)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3층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 자발적 민간연금제도로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3층 모형은 1994년 보고서 발간 이후 폭발하듯 펼쳐진 연금 개혁 논쟁의 뜨거운 감자였고, World Bank는 2005년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보고서를 통해, 여러 비판과 논의를 받아들여 개선한 5층 모형을 제시하였다(Holzman and Hinz, 2005).

ILO는 World Bank와 마찬가지로 3개 층(tier)으로 구성된 다층체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Gillion et al, 2000), 각 층별 구성 요소와 목적에 있어서 그 괘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는 급여 수준의 차원에서 탈빈곤이 목적인지, 소득수준 유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둘째는 제도 운용방식의 차원에서 적립형인지 부과형인지에 따라, 셋째는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서 각 층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0층은 탈빈곤을 위한 부과방식의 의무적 기초보장형 제도가 해당되고, 1층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강제가입 부과방식(혹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공적연금이 해당하며, 2층

3) 다양한 연금제도로 이루어진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을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의 벌어졌던 논쟁에 대해서는 권문일(2014), 김원섭 외(2006), 양재진(2001)의 연구를 참조하면 되겠다. 한편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논제가 아니므로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은 강제가입 확정기여형 민간연금, 마지막으로 3층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연금 및 사적 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World Bank와 ILO의 다층체계 모형은 급여 수준(빈곤완화 vs. 소득비례)과 운용방식(부과방식 vs. 적립방식), 그리고 강제성 여부(강제적 vs. 자발적)의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고[4], 이 틀에 한국의 다층체계를 대입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모형 구성

	World Bank(1994년 모델)	ILO(2000년 모델)	한국
3층	자발적 사적연금(기존3층) ① 개인저축, 기업연금 ② 확정기여 및 완전적립 ③ 저축과 보험의 역할	자발적 노후준비 ① 민간연금 및 사적이전 ② 확정기여 및 완전적립 ③ 노후소득 보충적 역할	자발적 사적연금: 개인연금 ① 자발적 민간연금 ② 확정기여 및 완전적립 ③ 노후소득 보충적 역할
2층	강제적 사적연금(기존2층) ① 개인저축, 기업연금 ② 법으로 규제된 완전적립 ③ 저축, 노후소득보장	강제적 사적연금 ① 민간연금 ② 강제가입형 확정기여 ③ 저축, 노후소득보장	강제적 사적연금: 퇴직연금 ① 강제적 사적연금 ② 완전적립방식 ③ 소득대체
1층	강제적 공적연금 ① 소득비례 공적연금 ② 보험료와 일부적립금 ③ 소득보전	강제적 공적연금 ① 소득비례 공적연금 ② 부과방식의 확정급여, 혹은 명목확정기여방식 ③ 소득대체	강제적 공적연금: 국민연금 ① 소득비례 공적연금 ② 부과방식(수정적립방식) ③ 소득대체
0층	기초연금/사회연금(기존1층) ① 자산조사, 정액·최저연금 ② 일반조세 ③ 재분배, 빈곤감소	기초보장연금 ① 자산조사, 정액·최저연금 ② 일반조세 ③ 재분배, 빈곤감소	기초연금 ① 자산조사, 정액·최저연금 ② 일반조세 ③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및 노인 빈곤 완화

주1) ① 제도형태, ② 운용방식 또는 재원, ③ 제도 목표
주2) World Bank는 1994년 3층 모형을 개량하여 2005년 새로운 5층 모형을 제시하였음. 이 때, 추가된 2개층은 1층과 4층으로, 1층은 "강제적 공적연금"을 제시하였고, 4층은 "가족 내 비공식 지원이나 개인의 금융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제시하였음
출처: World Bank(1994: 15), Gillion 외(2000: 62), Holzman과 Hinz(2005)를 바탕으로 재구성

2)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이력

전술한 다층체계 모형을 토대로 한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연금제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다층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한국의 다층체계 구축 이력과 그 맥락을 통시적인 차

4) 이 외에도 제도의 적용대상(보편형 대 선별형), 가입의 강제성(의무형 대 자발형), 급여 결정 방식(확정급여형 대 확정기여형), 급여 수준(정액 대 소득대체형), 재정 운영 방법(적립식 대 부과식), 관리 운영 방법(민간, 공공, 혹은 혼합) 등에 따라 더 다양한 형태의 제도 구분이 가능하다(Fox and Palmer, 2001)

원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한국에서 공적연금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시초는 1973년, 내자동원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복지연금』의 도입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오일쇼크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정무권, 2002). 물론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된 군인연금, 1975년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었고, 1961년 도입된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사회적 변화가 목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퇴직금제도 만으로는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표면화되었고,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 및 시행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일부 부여하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불완전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층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연금저축'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고 상품가입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적연금 활성화를 시도하는 한편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일관성 확립을 꾀하면서 다층체계 구축 및 정교화에 박차를 가하였다(정요섭, 2006). 아울러 IMF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겪는 가운데, 대다수의 기업들에서 퇴직금을 위한 기금 적립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퇴직금 지급이 기업들에게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면서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광수, 2007; 이용하, 2014). 그 결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고, 법으로 강제한 퇴직연금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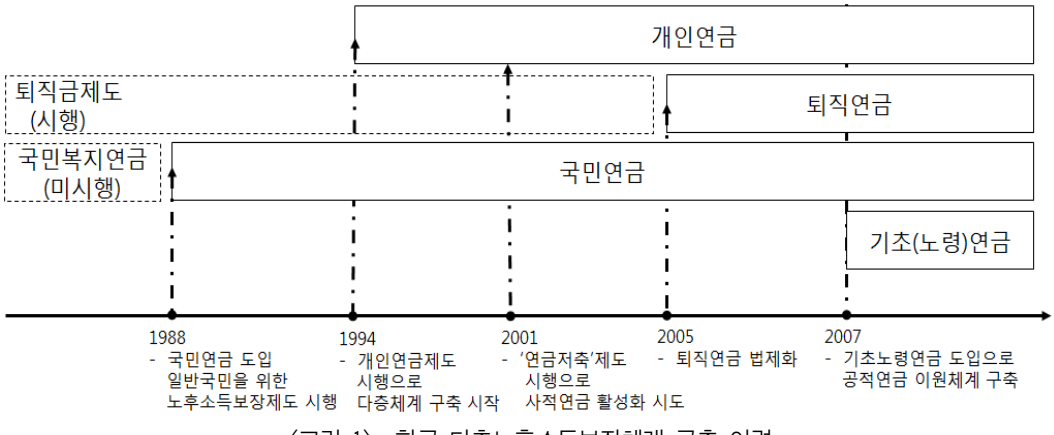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이력

그리고 1998년과 2007년, 2차례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현세대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위주의 단일공적연금체계가 이원공적연금체계(정액기초연금의 기초노령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국민연금)로 전환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외형적으로나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이처럼 한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5] 동시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역시 쏟아져 나왔고, 이들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크게 개별연금제도들을 각각 다루는 연구들과 다층체계의 관점에서 여러 연금제도들을 결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로 양분된다.

먼저 개별연금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용하, 2009; 유호선·이지은, 2011; 양재진, 2013).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국민연금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이근홍, 2006; 김원식, 2012; 김헌수, 2012; 김진수·이윤진, 2013) 역시 진행됐는데, 2차례의 개혁과정에서 보장성이 약화된 국민연금이 다층체계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이 다층체계의 한 축으로서 어느 정도의 소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개인연금 가입 결정과 가입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전승훈 외, 2006; 송윤아, 2009; 문용필, 2012; 김재호, 2013).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대다수의 실증 연구들은 제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존하고 있었다(어기구 외, 2009; 강성호, 2011; 원종욱 외, 2014).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한계를 보이고(김원섭·강성호, 2008),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원으로서 제도적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경향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미비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고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 제기를 통해 다층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연금 제도의 성숙 정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다층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명 외(2012)는 2011년 전국 3,106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전 국민의 개별 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 실태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

5) 기여에 기반을 둔 다층체계 구축 완료 시기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민·퇴직·개인연금,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가입률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에서 파악한 연구도 일부 있다. 김성숙(2009)과 나혜림·최현자(2014)는 단일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연금 가입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희정·임란(2011), 김경아(2012)는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다층체계 가입구조를 8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3개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연도의 다층체계 구축 실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가입 이력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지 못함에 따라 실제 다층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는 분석상의 한계를 가진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다층체계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언으로 결을 맺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지는 다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내실화를 다져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층체계가 얼마나 내실을 갖추어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1차 조사부터 8차 조사까지 총 8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복지패널은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양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다음의 4가지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다른 패널 자료들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기간의 조사 자료여야 한다.[6] 연금제도는 장기간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수급권을 획득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공적연금제도나 민간연금제도,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 시점의 가입여부를 가지고 다층노후소득보장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횡단분석 연구들은 큰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즉 개인들의 개별 연금제도 가입양태를 장기간동안 추적하는 종단분석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한신실, 2013). 둘째, 분석이 가능한 기간동안,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들, 공적연금(국민연금)[7]과 개인연금, 그

6) 물론,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8년이라는 시간도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 판단이 가능한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짧은 분석기간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계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층체계를 구성하는 개별연금제도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간의 패널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복지패널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7)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아, 2012). 셋째, 분석 기간 동안 경제활동연령대에 머무르는 대상이 다수여야 한다. 복지패널은 현재 활용 가능한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제외하고 조사 규모가 가장 큰 조사이고,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다른 비교 가능한 패널보다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 2-3).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에 대한 제반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자료는 분석대상의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해당한다.[8] 이는 다층체계 구축양태의 유형별 결정요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총 4,3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조건은 1차 년도부터 8차 년도까지 분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였고, 2005년(1차 년도) 기준, 국민연금 가입하한연령인 만 18세(1987년생)부터 2012년(8차 년도) 기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인 만 59세(1953년생)까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2) 분석방법

분석과정에서는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양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어서 구축 된 다층체계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별 다층체계 구축 양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퇴직·개인연금, 개별 제도의 가입 이력을 총체적으로 결합할 때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체계 구축 양태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채택하였다. 사건배열분석은 개인 수준에서 다층체계의 구축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방법론상의 이점을 가진다. 또한, 군집분석은 사건배열분석을 통해 구성한 다층체계 구축 이력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사례들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냄으로써 다층체계의 구축 양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건배열분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거,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한준, 2001; 최옥금, 2009; 한준·장지연, 2000; 유호선·이지은, 2011).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권 획득을 좌우하는 가입 이력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개인별 가입 이력을 근거로 사건배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총 5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특수직역연금은 직역별 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그 보장수준이 매우 높아 굳이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지 않아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가입에 있어서 소속된 사업장은 해당 제도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가입 양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다층체계 구축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업장과 관련된 요인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사건배열분석의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9] 첫째, 사건의 배열(sequence)을 구성하는 '상태요소'(element)를 정의한다. 각각의 배열은 관측 시기 동안 상태요소들이 결합된 순서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게 된다. 둘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배열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최적일치법이란 서로 다른 두 배열을 일치(matching)시키기 위해서 상태요소를 몇 번이나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혹은 삭제(deletion)하는 조작을 가해야 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배열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교체, 삽입,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 설정 값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조작 비용에 기초해 분석 자료의 비교 가능한 모든 배열 간 거리(pairwise distance)를 계산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이력을 토대로 상태요소를 아래의 〈표 3〉과 같이 총 8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3〉 개별 공·사 연금 가입이력에 따른 상태요소

상태요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국민연금	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퇴직연금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개인연금	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이어서 사건배열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매트릭스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을 시행하면 유사한 사건배열을 갖는 개인들이 동일한 집단으로 묶이게 되고, 이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양태를 유형화할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군집화의 방법으로 집단 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groups)을 이용하였으며 군집의 적정 유형수를 결정하기 위해 Pseudo-F 검증을 하였다(한준, 2001; 노혜진, 2012; 이주환·김교성, 2013).

이렇게 유형화한 다층체계 구축양태의 유형별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특성상 시계열 변동(within variation)과 패널 개체 간 변동(between variation)이 동시에 발생한다. 때문에 패널 개체 간 이질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패널 개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적 특성을 지니는 오차항(u_i, 시불변 요인)과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e_{it})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변변수를 시불변변수로 치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양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모형은 자료의 구성형태가 비순서형 종속변수이면서 패널구조인 경우 활용되는 분석방법으로 개인의 시점-선택 요인(시변변수)과 개인-선택 요인(시불변

9) 사건배열분석의 과정과 각 과정별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Brzinsky-Fay 외(2006)를 참고하면 된다.

변수)을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민인식·최필선, 2012: 182-203). 먼저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시변변수들에 대해서는 within 및 between 변환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형을 추정하였고[10], 시불변 변수들을 함께 설명변수로 조합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료가 패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추정계수 표준오차는 개인 내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11.1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패널 표집 상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단면 표본 가중치와 횡단면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총 4,306명의 특성과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여성 52.0%, 남성 48.0%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년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37.4세이고, 20대 이하 17.5%, 30대 40.3%, 40대 이상 4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고용자 및 자영자의 비중이 14.2%로 가장 작고 그다음은 임시 일용직 종사자가 21.1%, 상용직 31.2%, 비경제활동인구 33.6%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인 경우가 17.3%, 고졸인 경우가 42.2%,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가 4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개인소득은 약 167.1만원 수준이었다.

10) within 및 between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민인식과 최필선(2010)의 7장과 8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within 변환과 between 변환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변수들은 이론적으로 시불변변수로 취급되어 분석에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시변 변수 중 within 변환과 between 변환을 실시한 변수는 월평균개인소득 변수와 연령 변수이다. 연령은 생애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제곱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분석에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어($r^2=.62$, $p<.001$), 분석 모형에 동시에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셋째,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개별적으로 분석모형에 투입한 결과, 개인소득을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Pseudo $R^2=.3734$)이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을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Pseudo $R^2=.3607$)보다 뛰어났다. 개인소득은 상용근로자소득과 임시·일용근로자소득, 고용주·자영자 소득, 부업소득, 농림축어업경영주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표 4〉 분석대상의 특성(기준년도: 연령-1차 년도, 그 외-전체분석기간)(단위:%)

특성	분류	비중	특성	분류	비중
성별	여성	52.0	주된경제 활동참여	상용직	31.2
	남성	48.0		고용주, 자영자	14.2
연령 (만 나이)	평균연령(세)	37.4		임시·일용직	21.1
	20대 이하	17.5		비경제활동	33.6
	30대	40.3	교육수준	고졸 미만	17.3
	40대 이상	42.2		고졸	42.2
월평균개인소득(만원)		167.1		전문대 재학 이상	40.5

개별 연금 제도의 가입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률이 점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금별 가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복지패널 1차 년도 조사(2005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40.3%, 퇴직연금 27%, 개인연금 19.2%이었고, 8차 년도 조사(2012년)에서는 제 연금별 가입률이 국민연금 53.6% (+13.3%p), 퇴직연금 35.4%(+8.4%p), 개인연금 36.3%(+17.1%p)로 조사되었다.[11)]

〈표 5〉 공·사연금별 제 가입률(단위 :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연금	40.3	41.0	42.0	44.1	46.6	48.8	50.8	53.6
퇴직연금	27.0	28.3	28.3	29.1	29.3	31.2	33.6	35.4
개인연금	19.2	29.8	34.3	34.1	33.6	34.2	35.5	36.3

한편 연금제도별 가입률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률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의 개별 연금제도의 가입 이력을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제도별 가입이력을 결합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제도 각 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재의 연구경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즉, 개별 제도라 할지라도 각각의 제도를 다층체계라는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이해하고 종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김성숙, 2009).

11) 한편 본 연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률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특정 취약계층이나 전체 가구를 단위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률을 분석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분석 기간 중 경제활동 연령대(1953년~1987년 출생자)의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력의 단기 변화 양태

본격적으로 다층체계 구축 양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 전체 분석대상의 다층체계 가입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은 다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연금제도별 가입상태의 변화를 1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t년도의 상태요소 m이 그 다음연도에 상태요소 n으로 바뀔 확률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요소 간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몇몇 상태요소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태요소에 머물 확률이 약 50~70%에 이르고 있지만, 대개 상태요소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개 이상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와 한 개 연금 또는 그 이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사한 가입이력이 다음 연도에도 지속되고 있어 다층체계 구축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다층체계 상태요소별 비중 변화(단위 : %)

t \ t+1	1	2	3	4	5	6	7	8	소계
1	69.2	4.4	19.4	0.4	1.5	3.1	0.1	2.2	100.0
2	8.5	52.4	4.0	0.1	21.6	8.4	0.0	4.9	100.0
3	20.1	1.4	61.9	0.0	6.6	1.9	0.3	7.8	100.0
4	10.4	6.3	16.7	10.4	2.1	29.2	4.2	20.8	100.0
5	3.0	13.8	11.2	0.2	53.3	2.0	0.3	16.2	100.0
6	3.4	5.8	1.8	0.5	3.1	54.4	0.3	30.8	100.0
7	5.6	0.6	23.0	1.2	5.0	4.4	14.9	45.3	100.0
8	0.8	0.9	3.7	0.1	5.2	9.7	0.6	79.0	100.0
소계	11.9	6.2	14.3	0.2	10.8	12.2	0.5	44.0	100.0

한편 이처럼 가입 양태가 빈번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금별 가입 이력에 대한 횡단적인 정보만으로 다층체계의 내실화를 평가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확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차원에서 다층체계의 구축 양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시행하였고, 사건배열분석 결과 다층체계 구축 양태가 어떻게 유형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과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양태 유형화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 전체의 다층체계 가입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배열을 〈그림 2〉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대개의 경우 상태 요소 간 전환이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인연금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과 탈퇴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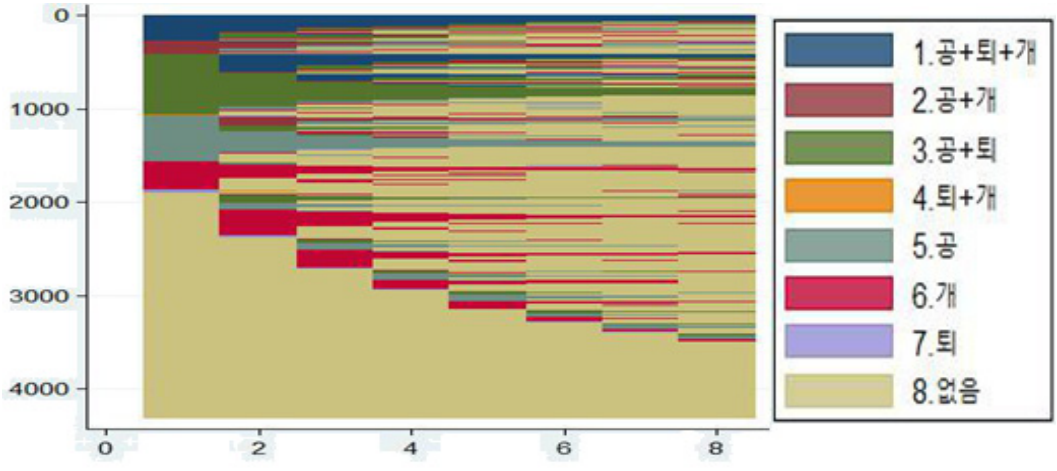

〈그림 2〉 다층체계 구축양태 구성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배열들을 동일 군집으로 유형화하여 다층체계 구축양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12]

유형①은 전체 사례의 27.7%가 해당하고, 상태요소 1과 3이 배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과 탈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다층체계 전 층에 대한 가입이력이 꾸준한 경우 이 유형에 속할 경향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가입이력이 지속된다면 다층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도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형①을 '다층보장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②는 그 규모가 가장 작았고(전체의 12.8%), 주로 상태요소 2와 5로 구성된 배열이 대부분이었다. 주된 배열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입이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이력은 불규칙하거나 부재하였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12) 군집별 사건배열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 3〉에 제시하였고, 상태요소별 색상은 〈그림 2〉와 동일하게 배색하였다.

안정적인 연금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라도 과연,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차례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급여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형②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아 노후 빈곤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형②를 '공적연금중심형'이라 명명하였다.

〈표 7〉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유형의 배열 특성 (n=4,306)

유형① 다층보장형(n=1,037)		유형② 공적연금중심형 (n=564)		유형③ 미준비형(n=2,705)	
총배열	cum %	총배열	cum%	총배열	cum %
3-3-3-3-3-3-3-3	6.9	5-5-5-5-5-5-5-5	9.8	8-8-8-8-8-8-8-8	30.1
1-1-1-1-1-1-1-1	12.9	2-2-2-2-2-2-2-2	12.2	8-8-8-8-8-8-8-5	31.4
3-1-1-1-1-1-1-1	17.1	5-2-5-5-5-5-5-5	13.7	8-8-8-8-6-8-8-8	32.7
3-3-1-1-1-1-1-1	19.0	8-8-5-5-5-5-5-5	15.1	8-8-8-8-8-8-8-3	33.9
3-3-3-1-1-1-1-1	20.0	8-8-8-5-5-5-5-5	16.5	8-8-6-8-8-8-8-8	35.1
5-3-3-3-3-3-3-3	20.9	5-2-2-2-2-2-2-2	17.6	8-6-6-6-6-6-6-6	36.2
(중간결과생략)		(중간결과생략)		(중간결과생략)	

주1) 상태요소 구성:(1 =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2 = 국민연금 + 개인연금), (3 = 국민연금 + 퇴직연금), (5 = 국민연금), (6 = 개인연금), (8 = 미가입)
주2) 사건배열분석은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분석방법으로, 유형별 비중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다층보장형 27.7%, 공적연금중심형 12.8%, 미준비형 59.6%로 비중이 조정됨

유형③은 세 개의 군집 중 규모가 가장 큰 유형(전체의 59.6%)으로 주된 배열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태요소 8과 6이 압도적으로 많아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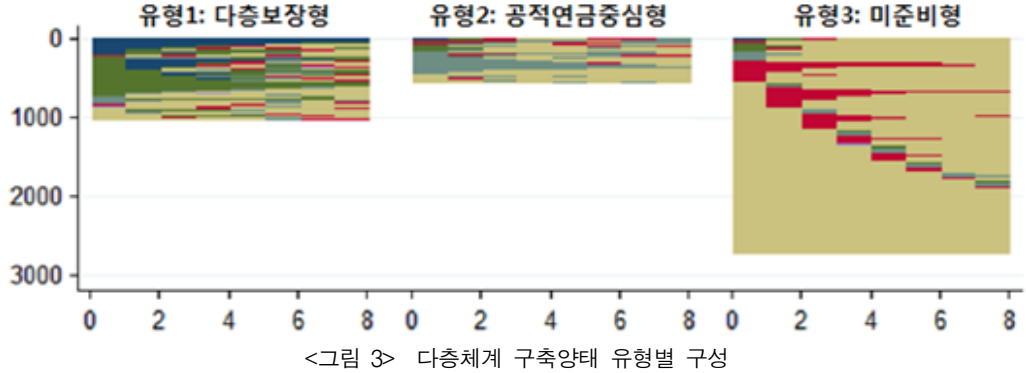

<그림 3> 다층체계 구축양태 유형별 구성

이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이력 조차 확보하지 못 하는 와중에 간헐적으로나마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중 대다수는 다층체계에서 배제된 수급 측면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하게 됨으로써, 노후소득을 공공부조제도나 기초연금 또는 사적이전에 의존할 공산이 크다. 이에 유형③을 '미준비형'이라 명명하였다.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양태 유형별 기초통계

이어서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에서는 남성의 비중(각각 70.8%, 76.5%)이, 미준비형은 여성의 비중(68.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에서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전문대 재학 이상, 53.8%),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학력수준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 측면에서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연금중심형과 미준비형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도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중심형의 평균연령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81.3%로 압도적인 반면, 공적연금중심형의 경우 고용주, 자영자가 50.3%, 미준비형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51.2%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개인 소득과 월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였다. 먼저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다층보장형 약 298.0만원(S.D.=240.19), 공적연금중심형 약 277.2만원(S.D.=317.00), 미준비형 약 82.7만원(S.D.=272.76)으로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은 개인소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준비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경제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단위 : %, 만원)

	다층 보장형	공적연금 중심형	미준비형		다층 보장형	공적연금 중심형	미준비형
성별				평균연령 및 연령대별 분포(1차 년도 기준)			
여성	29.2	23.5	68.7	20대 이하	17.6	5.9	20.0
남성	70.8	76.5	31.4	30대	48.6	30.1	38.5
학력				40대 이상	33.8	63.9	41.5
고졸 미만	9.7	21.2	20.0	평균연령	36.4	41.4	37.0
고졸	36.5	48.5	43.4	주된 경제활동 참여			
전문대재학 이상	53.8	30.3	36.6	상용직	81.3	17.7	10.8
경제수준(개인별 소득수준)				고용주, 자영자	1.6	50.3	12.3
평균소득	298.0	277.2	82.7	임시·일용직	11.7	19.8	25.7
표준편차	240.19	317.00	272.76	비경제활동	5.3	12.2	51.2

주1) 기준년도: 연령-1차 년도, 그 외-전체분석기간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지금까지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가 총 3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개별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군집 간 소속집단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 그리고 미준비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인 차원에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우선 다층보장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와 상용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 고졸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측면에서는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연령 변화에 따라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중심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연령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도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이하게도 여성보다 남성이 다층보장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험개발원, 2014). 그리고 개인소득의 차원에서 평균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다층보장형보다는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변화에 따라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하이브리드방식의 고정효과 다항 모형 분석 결과(4,306명의 34,448개 사례)

	다층보장형 v.s. 미준비형(base) B(robust S.E.)	공적연금중심형 v.s. 미준비형(base) B(robust S.E.)	다층보장형 v.s. 공적연금중심형(base) B(robust S.E.)
경제활동참여상태(기준:비경제활동)			
임시・일용직	0.971(0.153)***	0.523(0.162)**	0.448(0.157)**
고용주, 자영업자	-1.133(0.343)**	1.429(0.219)***	-2.562(0.266)***
상용직	3.272(0.224)***	0.954(0.210)***	2.317(0.172)***
성별(기준:여성)			
남성	0.499(0.149)**	1.081(0.143)***	-0.581(0.158)***
교육수준(기준:고졸 미만)			
고졸	0.072(0.154)	0.174(0.157)	-0.103(0.190)
전문대 재학 이상	0.446(0.179)*	0.056(0.182)	0.390(0.218)
월평균개인소득(평균)	-0.006(0.003)*	0.001(0.002)	-0.008(0.002)**
연령(평균)	0.053(0.056)	0.085(0.079)	-0.032(0.089)
연령^2(평균)	0.000(0.001)	0.000(0.001)	0.000(0.001)
월평균개인소득(변화량)	0.004(0.001)**	0.003(0.001)**	0.001(0.000)*
연령(변화량)	-0.366(0.057)***	-0.227(0.037)***	-0.139(0.053)**
연령^2(변화량)	0.005(0.001)***	0.002(0.000)***	0.003(0.001)***
(상수)	-3.354(1.160)**	-6.340(1.646)***	2.986(1.836)
Number of obs = 34,448 (Std. Err. adjusted for 4,306 clusters in pid)			
Wald $\chi^2(24)$ = 3292.60		Prob > χ^2 = 0.0000	
Log pseudo likelihood = -26627.744		Pseudo R^2 = 0.3734	

주1) * p<.05, ** p<01, *** p<.001

5. 결론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지향은 다층체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제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통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다층체계 구축양태 유형별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다층체계를 통한 개인별 노후소득 준비양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층보장형(27.7%)과 하나의 체계, 주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만을 획득할 것으로 간주되는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에 기댈 것으로 보이는 미준비형(59.6%)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향후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들을 다층체계로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양태 유형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자영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수 없으며(김수완·김상진, 2012), 또한 소득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다층보장형에 소속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게다가 기존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취약집단이었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중심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후소득 준비 정도에 있어서 특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이 개인을 단위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소득을 공유하고, 개인연금 가입이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층체계의 구축이 개인이 아닌 부부(혹은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후소득보장의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알려진 집단이 분석 결과 다층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취약집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적 제언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왜냐하면, 특정 정책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분별한 정책이 남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층체계 구축에 있어서 연령효과가 U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은 미준비형에 속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중년기에는 생애 주기 상 자녀 양육과 같은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의 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미준비형)가 구축되었으며,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중층의 제도들이 내실 있게 성숙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다층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통해 미준비형에 속한 이들을 점진적으로 다층체계에 포괄해 나가는 것이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내실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강화가 노후소득보장의 전제라는 주장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돌아봐도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강조하고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던 국가들(가령, 영국과 칠레로 대표되는 남미권 국가들)에서도 최근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개혁역전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확증된다(PPI, 2014; Mesa-Lago, 2014).

물론 노후소득 보장성의 측면에서 제 기능이 빈약해진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층체계를 지지하는 편에서는 공적연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확대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인·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소득원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용하·임병인, 2013; 윤석명 외, 2013).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대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유한 계층 일부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도 같기 때문이다(이용하, 2014: 232-236). 게다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유연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하는 개인연금과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이 보편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 자리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다수의 미준비형에게 있어 개인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입과 급여 수급, 그리고 후세대의 부담마저 역진적으로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대 다수의 미준비형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다층체계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미준비형을 위한 공적연금제도(0층의 기초연금과 1층의 국민연금)의 강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결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성호, 2011,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사적 연금소득 추정”, 『보험학회지』, 88:51-87.

고광수, 2007, “퇴직연금제형태의 다양화 연구”, 『사회복지정책』, 30:27-53.

권문일, 2014, “연금체계 유형과 특징”, 이용하·권문일·홍백의·김원섭·권혁진 편, 『공적연금의 이해Ⅱ』, 서울: 국민연금원구원.

김경아, 2012, “국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입구조 현황과 특성분석”, 김경아·권혁창 편,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2009,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 구조와 특성”, 『사회과학논총』, 28(1):27-50.

김성욱·한신실, 2014,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66(3):231-251.

김수완·김상진, 2012,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3-27.

김연명, 2013,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375-403.

김원섭·강성호, 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261-292.

김원섭·김수완·주은선·최영준, 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김원식, 2012,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보험금융연구』, 23(4):61-98.

김진수·이윤진, 2013,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사회보장연구』, 29(4):81-108.

김재호, 2013,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 -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 『보험금융연구』, 24(4):3-29.

김헌수, 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2(1):133-163.

나혜림·최현자, 2014,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4):43-72.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109-134.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서울:보험연구원.
문용필, 2012,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노인복지연구』, 58:89-110.
민인식·최필선, 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_____, 2012,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보험개발원, 2014, 『개인연금 가입현황 분석』, 보도자료(2014.1.16.).
송윤아, 2009,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RI Weekly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양재진, 2001,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연금개혁전략 비교연구: 한국에의 적용과 대응”, 『한국정책학회보』, 10(3):225-244.
양재진, 2013,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다층구조의 재설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1):356-376.
어기구·이용하·이용갑·김동헌·박능후, 2009,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축동향과 개선과제: 2009년도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회.
유호선·이지은, 2011, 『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손창균·양혜진·이힘찬·김은주·최미선·유근춘·신화연·방하남·이용하, 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류건식·우해봉·이정우·Takayasu Yuichi·Ismo Risku·남효정·서희정, 20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백혜연·손지훈, 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 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근홍, 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2:7-29
이용하, 2009,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사각지대 문제와 구조적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9(1):1-24.
, 2014,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이용하·권문일·홍백의·김원섭·권혁진 편, 『공적연금의 이해Ⅱ』, 서울: 국민연금원구원.
이용하·임병인, 2013,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이주환·김교성,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323-346.
이지영·최현자, 2011, “베이비부머 가계의 재무적 특성과 연금수급액 추정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4):41-66.
임병인·강성호, 2005, “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연구』, 16(3):89-121.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17(1):137-168.
전희정·임란, 2011, “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보험학회지』, 90:107-135.
정무권, 2002,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 서울: 인간과복지, 29-80.
정요섭, 2006,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보험개발연구』, 17(2):41-60.

최옥금, 2009,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정책』, 16(1):123-161.

한신실, 2013, “비정규직의 이질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149-176.

한준·장지연, 2000, “정규 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 23:33-5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13』.

Ambachtsheer, K., 2014, “Why we need to change the conversation about pension reform”, *Financial Analysts Journal*, 70(4): 4-8.

Barr, N., 2002, “Reforming pensions: Myths, truths and policy choic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5(2): 3-36.

Barr, N., and Diamond, P., 2010, *Pension Reform: A Short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Bonoli, G., 2003, “Two worlds of pension reform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35(4): 399-416.

Brzinsky-Fay, C., Kohler, U., and Luniak, M., 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The Stata Journal*, 6(4): 435-460.

Disney, R., 2000, “Crises in public pension programmes in OECD: What are the reform op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 F1-F23.

Fox, L., and Palmer, E., 2001, “New approaches to multi-pillar pension systems: What in the world is going on?”, 90-132 in *New Ideas About Old Age Security: Toward Sustainable Pension Systems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Holzman, R., and Stigliz, P. 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illion, C., Turner, J., Bailey, C., and Latulippe, D., 2000,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Geneva: ILO.

Holzman R., and Hinz, R., 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ashington, D. C.: World Bank.

Laslett, P., 1976, “Societal development and aging”, 87-116,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ited by Robert, H. B., and Ethel, S., New York: Von Nostrand Reinhold.

Legros, F., 2006, “Life-cycle options and preferences”, 183-200, in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Vol. 13)*, edited by Gordon, L. C., Alicia, H., Munnel, J., and Mihael, 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sa-Lago, C., 2014, *Reversing Pension Privatization: the Experience of Argentina, Bolivia, Chile and Hungary*, Geneva: ILO.

Pampel, F. C., 1998, *Aging, Social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PPI, 2014, *Pensions Primer: A Guide to the UK Pensions System*, Pensions Policy Institute.

World Bank, 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Zaidi, A., Grech, A. G., and Fuchs, M., 2006, *Pension Policy in EU 25 and Its Possible Impact on Elderly Poverty*, London: LSE.

The Examination of Construction Status on Multi-pillar System for Old Age Income Security in Korea

Han, Sinsil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Joo, Soojeong
(Chung-Ang Graduate School)
Shin, Seounghee
(Chung-Ang Graduate School)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llar type'(27.7%), the 'public pension type'(12.8%) and the 'insecure type'(59.6%) have been formed. Secondly, any socio-demographic factors like labor market status, gender, age et cetera could not guarantee the pension right for multi-pillar system. As a result, we emphasize that including the 'insecure type' into public pension schem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Key words : multi-pillar pension system,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ld age income security

〔논문 접수일 : 14. 12. 31, 심사일 : 15. 01. 20, 게재 확정일 : 15. 02. 09〕